

# 정부 및 유관기관 법령정보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-0335호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0. 10. 4.  
기술표준원장

##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(안) 입안예고

### 1. 개정 취지

장기간 사용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 가능 하도록 K 60335-2-5(4.0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- 제2-5부 : 전기 식기 세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), K 60335-2-7(6.2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-7부 : 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), K 60335-2-24(6.0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- 제2-24부 : 전기 냉장고,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)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K 60335-2-5(4.0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- 제2-5부 : 전기 식기 세

척기의 개별 요구 사항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(1) 7.102를 추가하여 전기 식기 세척기에 대하여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함

나. K 60335-2-7(6.2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-7부 : 세탁기의 개별요구사항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(1) 7.101을 추가하여 세탁기에 대하여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함

다. K 60335-2-24(6.0)(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안전성 - 제2-24부 : 전기 냉장고,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 사항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(1) 7.102를 추가하여 전기 냉장고에 대하여 표준사용조건 하의 권장 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 가능하도록 함

☞ 개정안 세부 내용은 협회([www.ekesa.or.kr](http://www.ekesa.or.kr)) 및 기술표준원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 홈페이지 참조

### 3.문의

개정(안)에 대하여 문의가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협회 및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※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연락처

- 주 소 :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-12, 마리오타워 310호
- 전화번호 : 02-809-8300(FAX : 02-890-8309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ekesa.or.kr>

#### ※ 기술표준원 연락처

- 주 소 :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,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전화번호 : 02-509-7245(FAX : 02-507-6657)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kats.go.kr>